



금융위원회

# 보도자료



보도

2018.6.4(월) 조간

배포

2018.6.1.(금)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하 주 식(02-2100-2960)	담 당 자	태 현 수 사무관(02-2100-2962) 권 기 순 사무관(02-2100-2963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(02-3145-7460)		건전경영팀장 이 준 교(02-3145-7455)
	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 오 흥 주(02-3145-8220)		보험제도팀장 홍 영 호(02-3145-7471)
	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박 종 수(02-3145-7240)		공제보험팀장 이 재 석(02-3145-7477)
	보험개발원 손해보험부문장 김 성 호(02-368-4214)		보험상품감리2팀장 서 영 일(02-3145-8240)
	손해보험협회 시장업무본부장 이 재 구(02-3702-8524)		보험리스크총괄팀장 박 진 해(02-3145-7242)
	보험연수원 부원장 김 기 성(02-920-0801)		재물보험팀장 유 승 완(02-368-4086)
	보험업무부장 최 윤 석(02-3702-8531)		
	기획부장 양 해 식(02-920-0830)		

## 제 목 :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이 촉진됩니다. : 손해보험산업 혁신·발전방안(2단계)

□ '18.1.31. 발표한 「손해보험 혁신·발전방안」의 일환으로,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함

- ① 기업의 보험회사 선택권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적용 폭이 확대되어, 보험료·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혜택이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
- ② 다양한 기업활동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을 키워 기업이 보험을 원할 경우 제때에 보험제공·가입 가능
- ③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위험관리 요건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규제체계는 선진화하여 해외진출 경쟁력을 확보
- ④ 경쟁촉진 및 손해보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 등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

## 1 추진 배경

-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경제·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손해보험의 적극적 역할 요구
  - 그간 손보사가 장기·저축성보험 위주 경영과 관행적 재보험 의존으로 기업의 위험평가·보험인수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
    - ① 상당한 기간 동안 위험 보장을 해온 경우에도 보험료를 직접 산출하지 못하고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지속 의존
      - \*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보험 중 약 80%를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의존
    - ② 위험평가·보험인수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계약 따내기에만 집중하거나 보험위험 공동인수 확대 등 단기 경영성과에 치중
    - ③ 전문인력 배양 등 핵심 경쟁력 확보에 소홀하여 외국 보험사 대비 경쟁력 열세 등으로 해외진출 성과도 미흡
- ☞ 그간 외형 성장에 치중해 온 손해보험을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·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

## 2 주요 내용

### 1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 촉진

- 대형 공장·선박 위험 등의 보험가입시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\*를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
  - \* (현행) 통계량이 충분하지 않아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동일 보험료를 제공받아 사용(협의요율)
- 보험료·보험건설팅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사가 공동인수하는 보험위험 범위를 축소하고, 신규 재보험사는 적극 인가
  - \* (현행) 500톤 미만(무선급) 선박에 대한 선박보험은 협회를 통한 공동인수만 가능

-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에 자체 보험인수 경험 등 개별 위험요소를 반영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

\* (현행)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보험료에 대한 명확한 할인·할증 기준이 부재하여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를 그대로 사용

- ☞ 보험인수 경쟁과 보험료 선택폭 확대 등 경쟁이 촉진되고,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혜택이 결국 기업에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## ② 손보사의 보험위험 평가역량 강화

- 보험사가 외형 경쟁보다는 실질 위험보장에 집중하도록 매출 관련 공시방법\*과 장기·저축성보험 판매에 유리한 영업규제\*\* 개선

\* (현행) 보험사가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제공(출재)해도 보험사 매출에서 미차감

\*\* (현행) 은행이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판매 비중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손해 보험사의 장기·저축성보험과 기업성 손해보험간에 기준이 상이

- 통계량 부족으로 보험료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보험사가 참조하도록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련 통계·보험료 제공

\* (현행) 개인정보 해킹 등을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시장 수요에 비해 보험료·보험상품이 제때 제공되지 못한 측면

## ③ 손해보험 및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

- 국제 기준에 맞게 보험사가 재보험 출재시 위험 이전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감독방안 도입(K-ICS도입과 연계)

\* (현행) 재보험 출재시 보험료 출재비율만큼 단순하게 비례적으로 리스크를 경감

- 손보사가 기업에게 인수한 보험위험은 일정비율(보험료의 10%) 이상 보유하도록 하여 손보사의 보험위험 관리 역량 강화

\* (현행) 기업이 손보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재보험사에게 보험위험의 대부분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

- 국제기구 권고기준 등을 반영하여 재보험 출재시 재보험증개사 적정성 평가기준 수립, 유동성 관리방안 수립 등을 의무화

\* '19년 예정된 IMF 금융안정성평가(FSAP)에 대비하여 국제기구 권고사항을 반영

#### ④ 전문인력 확대 등 손해보험 인프라 확충

-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산출기관(보험개발원)에 기업성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등 빅데이터 활용 강화

\* (현행) 보험사가 적정 보험료산출, 보험인수 등을 위해 물건별 정보가 필요하나, 국내는 해외에 비해 해당 인프라가 부족

- 손해보험 본연의 영역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보험계리사·언더라이터(심사역) 선발·교육방식 개선

\* (현행) IFRS17 등 계리사 수요 증가에 비해 너무 적은 보험계리사가 선발되고 손해보험에 전문성을 갖춘 보험계리사도 크게 부족(저축성보험 계리사 위주 인력구조)

### 3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

#### ① 기업이 보험가입시(기업성 보험) 보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.

- 재보험사나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별로 다르게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 보험료 경쟁이 촉진되고 결국 기업이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선택 가능

◇ (사례 : 보험료 경쟁) A기업은 공장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여러 보험사에 문의하였으나, 보험료 차이도 없고 기대했던 위험관리 컨설팅도 미흡해서 마지못해 보험에 가입을 해왔습니다.

☞ 앞으로는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해서 제시할 수 있는 여력\*이 커지므로 A기업의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험회사간 경쟁이 촉진되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해집니다.

\* 재보험사 또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은 요율을 변경하여 적용 가능

◇ (사례 : 보험인수 경쟁) B상선은 소규모 선박의 경우, 보험 가입시 손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여 어떤 손해 보험사에 문의하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제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

☞ 앞으로 보험 인수를 위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·보험컨설팅 경쟁이 촉진되어 B상선은 선박보험 가입 시 폭 넓은 선택권을 갖고 더욱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②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험상품이 확대됩니다.

- 사이버보험 등 위험보장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보험개발원이 통계 제공을 적극 확대하여 보험료·보험상품을 적시 제공

◇ (사례 : 신규 보험)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인 C회사는 해킹, 시스템 훼손 등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보험료가 동일(재보험사에게 제공받은 보험료)하거나, 원하는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도 있음

☞ 앞으로 사이버위험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사간 보험료/보장범위 등도 다양화되고 선택권이 넓어집니다.

③ 기업이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면 보험료도 할인 받습니다.

- 손보사는 적극적으로 위험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에 맞춰 안전시설을 구비하면 보험료 할인 가능

◇ (사례 : 화재 안전시설 구비) 공장을 운영하는 D기업은 화재예방을 위해 비용을 들여서 각종 안전시설을 구비하였고, 수년간 피해가 없었으나 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 받아왔습니다.

☞ 앞으로 보험사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화재 등 사고발생 및 사고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기업은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④ 보험계리사 등 보험권 內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납니다.

- IFRS17 도입 등 시장수요에 맞게 보험계리사 공급·채용이 확대되고, 선진국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손해보험 전문계리사도 별도로 육성

◇ (사례 : 보험계리사) 보험계리사 자격에 관심이 있었으나, 수험에 대한 부담 등으로 결국 응시를 포기하였습니다.

☞ 2차시험 합격기준 완화 이외에 과목별 최소선발인원 도입 등을 통해서 손해보험계리사에 적극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⑤ 손해보험사 핵심역량(보험료산출·언더라이팅 등)이 업그레이드 됩니다.

◇ (사례 : 보험사 핵심역량 제고) 손보사가 위험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인수한 위험 대부분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비정상적 관행이 반복되어 보험사 본연의 역량 발전이 미흡하였습니다.

☞ 손보사는 위험 보유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인수한 위험에 맞게 보험료가 책정되었는지, 추가인하 여력은 없는지,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긴 비중이 적정한지 등을 고민하면서 위험평가/관리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.

## 4 세부 추진계획

- '18.상반기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
  - '18년 하반기에 규제위 심사, 법제처 심사,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 완료
- 단기간내 추진 가능한 과제는 '18년 하반기부터(목표) 추진
  - 다만, 전문자격증 시험제도 변경,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등에 대해서는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숙려기간 부여

### < 추진과제별 조치사항 및 일정 >

추진 과제	조치사항	일정
<b>1. 기업성보험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촉진을 통한 보험료 인하유도</b>		
· 기업성보험의 보험료 경쟁 촉진	감독규정 개정	'18.3Q
· 선박보험 공동인수 범위 조정(공동인수협정 개정)	공정위 협의 금융위 승인	'18.3Q
· 재보험 등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인가	-	지속
·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산출범위 확대	-	지속
·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사 할인/할증 허용	감독규정 개정	'18.3Q
<b>2. 손보사의 보험위험 평가역량 강화</b>		
· 경영공시기준을 보유보험료 중심으로 개선	감독규정 개정 협회규정 개정	'18.3Q
· 방카슈랑스 판매비중규제 합리화	감독규정 개정 시행	'18.3Q '19년
· 기업성 보험의 정의 명확화	감독규정 개정	'18.3Q
· 보험료 산출시 재보험사 의존도 축소	감독규정 · 세칙 개정	'18.3Q
· 보험료 산출/적용 관련 구체적 법령 적용 기준 마련	법령해석	지속

### 3. 손해보험 및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

· 재보험 감독기준 개선 검토	방안마련	'19년
	시행령 개정	'20년
· 재보험 출재에 대한 리스크 평가방법 정교화	시행세칙 개정	K-ICS와 연계
· 최소보유비율 규제 도입	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	'18.3Q
·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재보험 내부통제기준 수립·운영	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	'18.3Q
·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	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	'18.3Q
· 재보험사 및 재보험중개사에 대한 적격성 평가의무 도입	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	'18.3Q
· 보험위험전가 평가의 신뢰성 제고	시행세칙 개정	'18.3Q

### 4. 전문인력 확대 등 손해보험 인프라 확충

· 기업성보험 위험평가 인프라 구축	감독규정 개정 보험개발원 추진	'18.3Q~
· 손해보험 전문계리사 양성 1) 계리사 과목별 최소선발인원 도입 2) 손해보험전문계리사 제도 도입 3) 손해보험사 선임계리사 제도 변경	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( '18.4Q)	시행시기
		'19년
		'22년
·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전문가 양성 1) 언더라이팅 전문가 교육제도 도입 2) 상위수준 자격증 제도 도입	-	시행시기
		'19년
· 대재해위험평가모델(CAT) 구축 및 활용	감독규정 개정	'22년
		'18.4Q
· 보험회사 해외진출 방식 다변화	별도 기준 마련 (금융위 의결)	'18.3Q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rfsc@korea.kr

